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일반계약직(운전) 공개채용 공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 4. 1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내용

직종	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사무	계약기간
일반계약직 I	라급	운전	1명	환경시설 운전 업무	2026. 6. 1. ~ 2028. 5. 31.(2년)

나. 임용 후 공사 사업운영 및 순환근무에 따른 직무 및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다. 응시분야 담당사무 직무기술서 [붙임] 참조

라. 임용 예정일: 2026. 6. 1.(월)

※ 공사 사정에 의해 임용 일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지

2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응시연령	자격 요건	거주지 제한
계약라급 (운전)	만55세 이상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공고일 전일 현재 김해시 거주자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 기준)

나. 공통요건

- 근무부서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야간 당직근무·연장근무가 가능한 사람
- 공사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달리 공사가 부여하는 업무가 가능한 사람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55세 이상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
- 성별/학력/병역: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지역(거주지)제한

구분	주민등록기준	비고
지역제한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일 전일부터 합격자 발표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다. 가점대상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지정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함

3 근로조건

직종	직렬	계약기간	근무조건	보수 및 복무
일반계약직 I (라급)	운전	2026. 6. 1. ~ 2028. 5. 31. (2년)	09:00 ~ 18:00 주5일 40시간, 일 8시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취업규정」, 「인사규정」, 「계약직 직원 규정」 등에 따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사공단 규정 참조)

※ 사업운영에 따라 **휴일근무, 야간근무, 당직근무(24시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 및 교대근무(06시~22시)** 가능한 사람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일정

지원서접수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최종선정
4. 17.(금) 09:00 ~4. 23.(목) 18:00	발표일: 2026. 4. 29.(수)	검사일: 5. 2.(토)	면접일: 5. 6.(수)	발표일: 5. 13.(수)

※ 원서접수 시 보완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분만 인정됨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함

□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

응시자 수	서류전형 방식	비고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여부로 판단 ※ 가산점 부여 없음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적극적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구분	평가방법					
소극적 서류전형	서류심사 후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합격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등)의 경우는 탈락 처리					
적극적 서류전형	계	평가점수(100점)			가점	
		자기소개서 작성 충실성	지원분야 적합성	우대사항	법정 가점	사회형평 가점
	100점 +가점	30	50	20	5~10	3
-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법정가점의 경우 평가점수 40% 미만인 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합격자 발표: 2026. 4. 29.(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합격자 공고

나. 인적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되어 면접대상에서 제외됨**

○ 검사일자: 2026. 5. 2.(토)

○ 검사방법: 자체적으로 개별 접속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검사

라. 실기시험 : 현장 당직근무(야간포함) 및 위험작업 수반 대상직군
체력검정인증서 제출시 면접전형 가점 부여(1점)

○ 인증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인증등급 4등급 이상
인증서 제출자에 한하여 면접가점 1점(미제출자는 가점 해당없음)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적성검사 실사자에 한함

○ 일 자: 2026. 5. 6.(수)(예정)

○ 장 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회의실 (김해시 가야로 245)(예정)

※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 10분전 입실

※ 체력검정인증 가점 대상자 인증서 제출(면접시험 이전 6개월 이내 측정 인증서 인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구 분	평 가 방 법
평정요소 및 불합격 기준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3점), 하(2~0점)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① 근로자로서 태도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 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단, 법정가점의 경우 평가점수 40% 미만인 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세대, 한 부모세대	해당분야 근무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2026. 5. 13.(수),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에 대한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관련서류 검토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합격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면접전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마. 예비합격자 결정

- 합격된 사람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수: 3명 이내

□ 채용(임용)일 : 2026. 6. 1.(월) 예정

※ 공사 사정에 의해 임용 일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지

5 시험일정 및 지원

가. 채용공고기간 : 2026. 4. 10.(금) ~ 4. 23.(목)

나. 서류접수기간 : 2026. 4. 17.(금) ~ 4. 23.(목)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기획경영팀
 - 주소: 김해시 가야로 245(연락처: 055-320-0422)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6 응시 지원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원서 접수 시	공통	① 응시접수증 1부 [붙임1] ② 응시원서 [붙임2]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5]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6]
	해당자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③ 자격요건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 • 사업주 발행 및 날인, 발급 확인자 날인(또는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① 주민등록등본(채용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②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기재분 제출 ※ 선택발급을 통한 현주소와 본인 정보만 기재(불필요한 개인정보제공 주의) ③ 최근 2년 이내의 국가건강검진 결과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단, 국가건강검진 미 실시 시 일반채용신체 검사 결과(채용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방법
	◆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건강검진 수검자 발급 가능)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 ⇨ ② '건강IN' ⇨ ③ '나의 건강 관리' ⇨ ④ '건강검진결과조회' ⇨ 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불가 시,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사항 확인
	발급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메인화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반드시 '전체이력' 발급 ②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유선(1588-0075) 팩스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 ⇨ 로그인 ⇨ 메인화면 '자격 득실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 사항으로 발급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유선(1577-1000) 팩스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⑥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⑦ 반명함판 사진 1매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⑨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소정양식) 1부 ⑩ 자격증명서 사본(자격 및 면허증 원본 지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⑪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별 모두 발급) 각 1부(경력합산경우) ⇒ 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작성 시 교육사항, 자격사항, 자격증, 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증빙 가능한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한 사항에 대한 누락 또는 잘못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2) 응시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자격 및 자격사항 등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경력사항의 경우 사전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기간, 담당업무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자격요건, 가점대상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필요하오니 응시자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기재누락 등으로 발생한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다.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접수기간 동안에는 응시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 바. 응시원서 등에 허위·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 사.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 아.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응시자는 서류 재제출 없이 재공고에 당연 응시자로 접수됩니다.
- 자.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차. 채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기획경영팀 ☎ 055-320-0422로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접수증

본인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일반계약직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응시번호	※	성명	(한글)
응시분야	일반계약직 I 라급(운전)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	응시분야	일반계약직 I 라급(운전)
성 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㉞			

유의 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 시 원 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응시분야	일반계약직 I 라급(운전)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자격·면허		
추가항목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세대 <input type="checkbox"/> 한부모세대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20 . .

지 원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입 사 지 원 서 작 성 요 령

1. 입사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내용을 전부 읽은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서는 서식 변경 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자기소개서는 A4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필 또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3. ※ 접수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직종 및 직급, 채용분야 응시자 해당사항 기재
 5. 현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6. 연락처는 시험 진행기간 동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여야 합니다.
 7. 지역인재 채용시 소재지는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로(예 김해시) 기재합니다.
 8. 교육, 자격, 경험(경력)사항은 지원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작성합니다.
 9. 응시원서 작성시 교육, 자격, 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사항 등 증빙 가능한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고, 특히 경력사항의 경우 사전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기간, 담당업무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험은 보수와 같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은 일을 수행한 것이며, 경력은 보수와 같은 대가가 주어지는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붙임 5]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채용직위(직급)	일반계약직 I 라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임직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임직원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미해당

1, 2, 4,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미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이의제기 신청서(필요 시 제출)

접수번호		접수일자	
채용공고		지원분야	
성 명		수험번호	
연 락 처		이 메 일	

이의신청 내 용	사실관계(일시, 장소, 대상, 상황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사유(이유,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이의신청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서명한 스캔본(PDF파일)을 채용 문의 이메일(apply@ghdc.or.kr)로 송부(이메일 접수 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55-320-0422) ○작성방법 : 사실관계(일시, 장소, 대상, 상황 등 육하원칙) 및 이의신청 사유(이유,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며, 답변은 이의제기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회신합니다.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전형 불합격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불합격자의 신청 외의 문의 사항은 답변되지 않음) - 채용시험과 무관한 내용(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관련 근거 미제시 등)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인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등) - 타법령에 저촉될 경우(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등) - 기타(상기 사유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